#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 번호 | 42 |
|---|---|

제출연월일 : 2006년 12월 1일
제 출 자 : 김 진 석의원외 5인

## 1. 제안이유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 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군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3조)

나.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평창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7조)

라. 평창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마.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관계부처승인 : 관계부서 협의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군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교육경비지원사업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경비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 교육과정 운영사업
7. 기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평창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지원신청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금의 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관련 실·과장 3인
2. 평창군의회 의원 2인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관계 공무원 2인 및 민간인 3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금의 교부신청 등)** ①군수는 당해년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지원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지원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원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의 신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3조(지원결정의 변경·취소)** ①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11. 생략
②생략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재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⑤ 생략
⑥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본호신설 2000.12.27.]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생략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